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업명 :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및 백업시스템 고도화
- 발주기관 : 한국뇌연구원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식회사 에티버스
- 대상물품명 : Oracle Database Standard Edition2 Processor License * 2PL
(※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포함)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의 물품공급과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특수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64,300,000원, 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계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계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4년 3월 11일

발주기관

한국뇌연구원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식회사

에티버스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업명 :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및 백업시스템 고도화
- 발주기관 : 한국뇌연구원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에스씨지솔루션즈(주)
- 대상물품명 : Unity380 2U 25x2.5 DAE(800GB SSD*6, 1.8TB 10k SAS*6)*1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의 물품공급과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특수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34,496,000원, 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4년 3월 11일

발주기관

한국뇌연구원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에스씨지솔루션즈(주)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업명 :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및 백업시스템 고도화
- 발주기관 : 한국뇌연구원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한국휴렛팩커드 유한회사
- 대상물품명 : HPE 5710 24SFP+ 6QSFP+/2QSFP28 Switch * 4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의 물품공급과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특수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61,600,000원, 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4년 3월 11일

발주기관

한국뇌연구원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한국휴렛팩커드 유한회사 (인)

